

웅지세무대학교 총 학 생 회	총 학 생 회 칙	제정일자	20.11.17
		최근개정	20.12.16

웅지세무대학교 총학생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웅지세무대학교 전체학생총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칙은 「고등교육법」 및 「웅지세무대학교 학교규칙」에 따라 학생자치를 실현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웅지세무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우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웅지세무대학교에 재적 중인 모든 학부(과)생으로 한다.

② 회원 중 재학생은 정회원이 된다.

③ 회원 중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을 일부 상실한 준회원이 된다.

④ 제적·자퇴·졸업 등일 경우 회원의 자격은 소멸한다.

⑤ 준회원은 제4조에 열거된 의무·권리 중 제1항 제1호의 권리와 제2항 제2호를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에서 진행하는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와 문서 등을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활동할 권리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회칙 준수의무
2. 본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 납부의무
3.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의무

제5조(구성) 본회는 전체재적생·총학생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부총학생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대의원회·학부(과)대표·동아리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단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임시 또는 특별 기구를 만들 수 있으며, 특별 기구는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이 지정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2장 전체학생총회

제6조(지위 및 명칭)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7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8조(의장) 총회 의장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회장 탄핵소추 시에는 본회의 대의원 회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9조(소집)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청
2. 대의원회의 소집의결
3.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소집요구
4. 회장의 탄핵결정 다만,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공고) 총회의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일시와 사유를 명시하여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없다면 학교에 요청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0.12.16.>

제11조(기능 및 탄핵) ① 총회는 본회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② 총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

③ 탄핵안 발의 시 회장과 부회장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은 회원 누구든 발의할 수 있고 그 발의는 재적회원 40인 이상의 연서로 효력을 가지며 대의원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탄핵을 의결한다.

⑤ 대의원회는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2주 내로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12조(의결) 총회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6.>

제13조(총투표) 의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정책 또는 총투표에 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주요 사안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1. 총투표의 결과는 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총투표의 의결은 총회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총투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 중 투표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총학생회장 등

제1절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14조(회장) ① 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총학생회 업무를 통할한다.

- ② 회장은 본 회의 각종 대외활동을 관장하며, 해당 업무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집행부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0.12.16.>
- ④ 회장은 자신이 담당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신의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 ⑤ 회장은 정당 또는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지양하도록 한다.

제15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탄핵, 사퇴 또는 유고시에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만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탄핵이나 사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중임할 수 없다.
- ③ 중임 시 출마하는 후보자의 구성원은 이전과 동일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개정 2020.12.16.>

제17조(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이하 "회장 등"이라 한다)은 회원 전체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임기 만료 20일 이전까지 차기 회장 등을 선출한다.

- ② 회장 등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2인 1조로 출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장 등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자치기구내 여타의 직책으로부터 후보 등록 이전에 사임해야 한다.
- ④ 당선인은 당선 즉시 총학생회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고 한다) 위원장이 되어 인수위를 구성하고 임기 시작 전까지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다.
- ⑤ 회장의 유고 및 탄핵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선임한 1인을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얻어 잔여임기 동안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졸업학기까지 정상적인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자는 회장·부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 ⑦ 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16.>

제18조(선서) 회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다음 내용을 선서한다.

"본인은 웅지세무대학 총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발전에 공헌하며 학우들의 복지 증진과 학업 성취를 위해 노력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학우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0.12.16.>

제19조(신분보장) 회장, 부회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2절 집행부

제20조(지위 및 명칭) 총학생회 집행부(이하 "집행부"라 한다)는 총학생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21조(구성) ① 집행부는 인수위원회에서 구성하고 회장이 인준한다.

② 집행부는 집행부별 부장·차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과 부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학생회의 집행부서는 7개로 하고, 현행 부서 내에서 역할과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1. 총무부 : 총학생회의 서무·문서·회계 및 이와 관련된 기타사항
2. 기획부 : 총학생회 주관 행사의 기획에 관련된 사항
3. 대외사업부 : 동아리 및 대외적으로 관련된 사항
4. 홍보부 : 교내 외의 홍보 및 총학생회의 캠페인 및 각종 행사 홍보물에 관한 사항
5. 문화체육부 : 학술·문화·체육 및 예술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6. 복지부 : 학우들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졸업준비위원회 관련 사항
7. 환경부 : 학우들을 위한 교내 시설 청결 및 위생 점검

③ 회장은 각 부장의 임명 사실을 자격요건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임기 및 자격) ① 집행부의 부장 및 차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고, 차기 총학생회가 출범하면 집행부 전원이 당연 퇴임한다.

② 집행부원의 임명 시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직전 학기 생활관 등 기타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직전 학기 성적 평점 3.5 이상인자

③ 집행부원으로서 타의 모범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 유기정학 이상의 학교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한다.

④ 집행부원으로서 활동이 미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부원에서 제명하고, 재선임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집행부원을 뽑을 수 있다. 다만, 제명 과정에서 총학생회장단 및 부장단 중에 5명 이상 혹은 과반수가 투표를 찬성한 후 제명한다.

⑤ 교내 다른 자치기구의 활동으로 공로 장학금을 받는 자는 집행부 부장 또는 차장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23조(기능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학생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 수립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에 관한 사항

제24조(소집 및 활동) ① 집행부는 매주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지며, 그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 내부의 시행규칙에 따라 정한다.

②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25조(업무권한) 집행부는 총학생회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최고 권한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실무자로서 발언할 수 있다.

제3절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제26조(지위 및 명칭) 회장 선거 후 당선인은 인수준비를 위한 인수위원회를 지체 없이 설치해야 한다.

제28조(구성) 인수위는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을 주축으로 구성한다.

제29조(업무) 인수위는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차기 총학생회 집행부 구성에 관한 일정 및 제반 업무
2. 총학생회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필요한 총학생회의 사업의 진행
3. 차기 총학생회 집행부 구성을 위한 공개인선
4. 기타 인수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관련된 업무

제30조(협조의무) 기존 회장·부회장 및 집행부는 인수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를 지닌다.

제31조(해산)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차기 집행부를 구성하고 회장이 새로 취임하는 날에 인수위는 해산한다.

제4장 대의원회의

제32조(지위 및 명칭) 대의원회의는 각 학부(과)대표들 및 학생자치기구의 대표들이 모여 구성되는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제33조(구성) ① 대의원회의의 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학부(과) 전공별 대표 1인
2. 도서관자치회에서 선출한 1인
3. 생활관자치회에서 선출한 1인
4. 동아리연합회에서 선출한 1인

- ② 대의원의 학적 변동 및 사임의 경우 제1항의 해당 대표 중 1인을 다시 선출한다.
- ③ 대의원회의 의장·부의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의장·부의장이 학적 변동 및 사임의 경우 호선으로 다시 선출한다. <개정 2020.12.16.>
- ④ 대의원회의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전임 대의원회의의 장에게 추천받아 임시로 대의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는 전공별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로 한다.

② 대의원 선출 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대의원으로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소집에 총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대의원에서 제명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학부(과) 및 학생관할부서에 통보하고 재선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단, 불참사유가 서류상으로 증빙이 가능하거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불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6.>**

1. 정기총회 : 매 학기 초 30일 이내, 학기 말 (학기 2회)
2. 임시총회 : 대의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대의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는 때 **<개정 2020.12.16.>**

1. 총회의 소집요구
2. 총학생회칙 및 관련 세칙 제·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 [<개정 2020.12.16.>](#)
3. 대의원회 구성 및 대의원회 의장단 선출
4. 총학생회의 사업 계획안 및 예산 및 결산 심의·승인과 감사
5. 학생자치기구 회계 감사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6. 총학생회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7. 대의원회 활동 예산안 작성
8. 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심의
9. 집행부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기 발견될 때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 결의

10. 집행부 부장 및 각 차장에 대한 해임 결의

제37조(활동) 대의원회는 정기·임시 총회 시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38조(통보의무) 대의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가운데 결정된 내용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결) 대의원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40조(재정) 대의원회의 경비는 총학생회와의 예산 편성 심의를 거쳐 승인된 예산으로 하되,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학부(과) 대표

제41조(지위 및 선출) 학부(과) 전공별 대표(이하 “과대표”라 한다)는 학우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자치기구로 학부(과) 별로 자치적으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42조(임기) 과대표의 임기는 한 학기이며 그 기간은 해당학기의 개강부터 종강까지 한다. 단, 부득이하게 군 입대나 휴학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사퇴할 수 있으며, 사퇴 시에는 학부(과)에서 재선출하여 새로운 과대표를 선출하고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업무전반에 관하여 이임해야 한다.

제43조(자격) 과대표는 자동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얻는다.

제44조(기능 및 권한) ① 과대표는 각 과를 대표하여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각 학부(과)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과대표는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대표 중 학년 구분 없이 각 전공별 1명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다.

제6장 동아리연합회

제45조(지위 및 명칭) 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의 자치기구이다.

제46조(구성) 동아리의 구성원은 본 회의 회원으로 이루어지며 학생관할부서의 승인을 받은 동

아리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16.>

제47조(의장) 연합회의 회장은 각 동아리 회장단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제48조(임기 및 기타) 동아리연합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16.>

제7장 재정

제49조(수입 및 운영원칙) ①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의 수입을 주된 수입으로 하고 학교 보조금과 기타 수익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를 구성하는 각 기구는 재정과 자산이 공적 소유임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용, 관리해야 한다.

③ 본회의 재정은 각 기구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④ 재정운영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⑤ 기타 수익사업 수입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⑥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해서 각 기구의 회계담당자는 사업 진행일, 진행 담당자, 세부내역,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부착할 공간 등이 포함된 영수증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모든 사업 집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본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예산안·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⑨ 결산 공개의 최종적인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신설 2020.12.16.>

제50조(회계연도) 총학생회의 회계연도는 매 학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1조(예산안의 편성) ①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자는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의 예산안을 임기 시작 전까지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안이 대의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여 학생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승인 아래 경상비만 집행할 수 있다.

④ 예산 집행 시 사업의 증감 등으로 예산액의 가감이 필요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57조 의결방법에 준하여 집행한다.

⑤ 예산 편성·집행 시 총학생회비 해당 임기 수입의 10% 이상을 반드시 차기 이월 시켜야 한다.

⑥ 총학생회비는 편성된 예산안에 따라 학기 등록 시 납부한다.

⑦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은 해당 학기 개강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면 총학생회비를 반환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16.>

제52조(지출) 지출에 관하여는 사업 초기에 작성한 예산을 근거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학생회의 활동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결산공고) 회장은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2학기 회계 감사 내용의 공고로 결산서의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감사) ① 본회의 총학생회비와 관련된 모든 사업, 예·결산, 회계, 재정 등을 감사하며 총학생회비로 운영되는 모든 학생자치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② 총학생회 집행부는 6월 첫째 주 내, 11월 첫째 주 내 대의원회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대의원회는 5월과 10월에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감사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 감사를 위한 임시 기구이며, 감사위원은 총학생회원의 알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것을 활동 목적으로 하고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감사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에서 감사위원을 구성하며 실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을 제외한 실무자를 더 둘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감사 일정 조율과 같은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4. 감사위원은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공정하게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계 감사와 관련하여 각 학생자치기구는 회계장부와 기타 감사위원회가 요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사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대의원회에 회부하여 각 자치기구장에게 회계 책임자의 해임을 건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1.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이 기록된 장부와 영수증. (다만,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회계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2. 자산관리대장 혹은 물품관리대장
3. 지출 내역이 기록된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4. 집행내역에 따른 지출결의서
5. 예산서 및 각각의 행사계획서
6.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감사 일정 진행에 있어 각 학생자치기구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⑥ 영수증은 캡처 및 사본이 아닌 정식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현금 3만원 이하), 거래명세표(현금 3만원 초과)만 인정하며, 이외 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간이 영수증과 거래명세표 사용을 지양하며 영수증 발급 시 구매일시, 상호명, 사업자 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금액을 기재하며 필히 사유서를 작성한다.

⑧ 이체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 ⑨ 감사결과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징계 및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1. 감사 기한 미준수
 2. 감사 규정 미준수
 3. 감사 자료 양식 미준수
 4. 감사 자료 누락
 5. 감사 자료 훼손 및 위조
 6. 횡령
 7. 기타 감사위원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카드혼용, 송금오류, 포인트적립, 개인 소득공제, 수수료, 지적사항 및 반환 미이행 등)
- ⑩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마치고 동시에 회의록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교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6.>

제8장 회칙 개정

제55조(발의)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야 한다.

1. 전체학생총회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회장·부회장 정원 포함)
 2. 대의원회·총학생회 3분의 2 이상의 발의(회장·부회장 정원 제외)
- ② 제1항 제2호에서 총학생회의 정원은 제21조에 따른 각 부의 부장들을 말하며 그 외 차장·일반회원 등은 제외한다.

제56조(공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회장이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총학생회의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학교에 요청하여 공고한다.

제57조(의결방법 및 개정안 확정) 제55조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을 통해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1. 대의원회에 소속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
2. 전체학생총회의 정회원 과반수 참석의 학생투표를 통한 투표자 과반수 찬성

제58조(공포 및 시행일) ① 제57조에 따라 개정된 회칙은 회장이 총학생회의 홈페이지에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총학생회의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학교에 요청하여 공포할 수 있다.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의 시행일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9조(운영세칙) ① 이 회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세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제55조 내지 제5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12.16.>
- ②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 ③ 동아리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16.>

부 칙 <1판-제정/시행/공포 2020.11.17.>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공포 2020.12.16.>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